

제 호

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

1. 업 체 명: (사업자등록번호:)

2. 대 표 자: (생년월일:)

3. 주 소:

가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종류 및 명칭:

나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소재지: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

